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1468 호 2024. 8. 16.(금)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68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70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7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36호[공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45호[공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52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53호[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56호[공시송달공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60호[공시송달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65호[공시송달공고]…… 14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산하동 산234-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
 나. 명칭: 대곡산비료 진입도로(소로3-276호선) 개설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234-11번지 일원(변경없음)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B=4m, L=523m(변경없음)

구분	시설명(노선명)	규모		비고
		폭(m)	길이(m)	
도로	소로 2-331호선	4	57	금회개설
도로	소로 3-276호선	4	466	금회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농업회사법인 대곡산비료(주) 대표 박종근
 나.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845-6번지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8. 12. 27. ~ 2023. 12. 31.
 - 변경: 2018. 12. 27. ~ 2026.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번호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소2-331호선			소3-276호선			계					
				도로	사면	소계	도로	사면	소계	도로	사면	계	성 명	주 소	
1	614-3	답	395	103	56	159				103	56	159	국(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2	854-1	답	1,192				110	575	685	110	575	685	국(건설교통부)		〃
3	920	천	32,009				39	210	249	39	210	249	국(건설교통부)		〃
4	920-23	천	1,001	25		25				25		25	국(건설교통부)		〃
5	산187-1	임	2,581	1		1				1		1	울산광역시		〃
6	산187-5	임	1,522	8		8				8		8	울산광역시		〃
7	산191-5	임	1,535	75	181	256	38	508	546	113	689	802	국(건설교통부)		〃
8	산191-8	임	283	71	65	136				71	65	136	국(건설교통부)		〃
9	산192-2	임	2,714				246	439	685	246	439	685	국(건설교통부)		〃
10	산192-3	임	506				73	178	251	73	178	251	국(건설교통부)		〃
11	산194-5	임	10,071				392	964	1,356	392	964	1,356	국(건설교통부)		〃
12	산204-1	임	7,470				385	1,516	1,901	385	1,516	1,901	국(건설교통부)		〃
13	산234-11	임	12,180				702	1,710	2,412	702	1,710	2,412	국(건설교통부)		〃
계			73,0459	283	302	585	1,985	6,100	8,085	2,268	6,402	8,67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25길 27 외 1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호계동 1019-1	당수골25길 27	20170504	20240816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을 반영
2	어물동 1100	황토전길 166-4	20040809	20240816	자연마을인 황토마을 명칭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7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50 외 1건**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1	무룡1로 50	2024.08.07	건물 멸실
2	무룡1로 52	2024.08.07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36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창평동503-6	노선명	○ 소3-180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4m ○ A(일시) = 7.2㎡ ○ A(계속) = 0.24㎡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45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송정동1170-6 ○ 송정동1149-4 ○ 송정동799-11	노선명	○ 소2-140 ○ 소2-400 ○ 소3-197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15m ○ A(일시) = 27㎡ ○ A(계속) = 0.9㎡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5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4호선)사업
   나. 명 칭 : 이화정마을 우회전 해소길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9-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도로개설(L=80m, B=3~1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 2021. 9. 2.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중산동	631	4	도	46.0	1.0	기획재정부				
1	중산동	631	4	도	1.0	1.0	기획재정부				
2	중산동	629	8	대	1.0	1.0	울산광역시 북구				
2	중산동	629	8	대	1.0	1.0	울산광역시 북구				
3	중산동	629	2	전	116.0	4.0	기획재정부				
3	-	-	-	-	-	-	-				
4	중산동	629	11	대	6.0	6.0	울산광역시				
4	중산동	1429	-	도	14.4	6.0	울산광역시				
5	중산동	629	9	대	43.0	43.0	울산광역시 북구				
5	중산동	629	9	대	43.0	43.0	울산광역시 북구				
6	중산동	631	28	임	58.0	58.0	울산광역시 북구				
6	중산동	631	28	임	58.0	58.0	울산광역시 북구				
7	중산동	631	6	임	17.0	17.0	울산광역시 북구				
7	중산동	631	6	임	17.0	17.0	울산광역시 북구				
8	중산동	1200	44	도	142.0	35.0	기획재정부				
8	중산동	1200	62	도	35.0	35.0	울산광역시 북구				
9	중산동	1200	59	도	7.0	7.0	울산광역시 북구				
9	중산동	1200	59	도	7.0	7.0	울산광역시 북구				
10	중산동	1200	45	도	1.0	1.0	건설부				
10	중산동	1200	45	잡	1.0	1.0	울산광역시 북구				
11	중산동	1166	97	천	646.4	83.0	건설부				
11	중산동	1166	138	잡	82.5	82.5	울산광역시 북구				
12	중산동	1200	60	도	26.0	26.0	건설부				
12	중산동	1200	60	도	26.0	26.0	건설부				
13	중산동	631	18	도	146.0	139.0	울산광역시 북구				
13	중산동	631	18	도	146.0	139.0	울산광역시 북구				
14	중산동	1166	92	천	452.0	4.0	기획재정부				
14	중산동	1166	141	천	4.0	4.0	울산광역시 북구				
15	중산동	629	10	전	5.0	5.0	기획재정부				
15	중산동	629	10	전	1.0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432	-	도	4.0	4.0					
16	중산동	631	27	철	30.0	15.1	국토교통부				분할측량
16	중산동	631	27	철	14.9	-	국토교통부				
16	중산동	631	32	철	15.1	15.1	국토교통부				
17	중산동	1166	130	천	158.0	130.0	건설부				
17	중산동	1166	130	천	158.0	130.0	환경부				
18	중산동	1166	49	전	412.0	85.0	울산광역시 북구				
18	중산동	1166	137	전	84.8	84.8	울산광역시 북구				
19	중산동	1166	48	도	430.9	230.0	건설부				
19	중산동	1166	48	도	430.9	230.0	건설부				
20	중산동	1166	123	도	70.0	28.0	건설부				
20	중산동	1166	139	잡	27.7	27.7	울산광역시 북구				
21	중산동	1166	127	도	91.7	5.0	울산광역시 북구				
21	중산동	1166	140	전	6.8	6.8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5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 제23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4년 8월 14일 ~ 2024년 8월 28일 (14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부과예정금액	비고
박O구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 ***동 ***호	폐문부재	1,173,660원	- 의료급여 수급 사례 미적용 건 부당이득금 환수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2024년 8월 28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 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052-241-7624)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5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13. ~ 2024. 8. 28.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78-1번지 외 3필지	이재*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1,611,000원

5. 관련법규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60호

공시송달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8. 16. ~ 2024. 8. 30.(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78-58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공작물설치-개 철조망)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공작물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4. 8. 30.(금)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65호

공시송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고자「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관리자)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14. ~ 2024. 8. 29.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미송달 사유
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2길 14, 대암훼미리아파트 상가동 제3층 제1호, 제2호	박숙*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무단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폐문부재

5.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